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4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오세희 · 이주희 · 박희승
이용우 · 어기구 · 박홍배
박지원 · 전진숙 · 이훈기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념식·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사업·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

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화 사용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내외의 환경 및 미관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국가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조형물 또는 기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생화 사용 촉진 등)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 하여야 한다.</u> <u>1. 국가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u> <u>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내 외의 환경 및 미관 조성 사 업</u> <u>3. 그 밖에 국가등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조형물 또는 기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